

『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5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5월 20일

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구미보건소장 구 건 회

나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민법」 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근거 없이 시립노인요양병원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(정의)에서 공유재산이나 물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이나 동산을 의미하는 바, 공유재산이나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“시장”을 “구미시”로 수정 (안 제4조제6항)
- 「민법」 상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내용을 따르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“물품의 손·망실시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”라는 조항을 부분 삭제 (안 제5조제2항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민법」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근거 없이 시립노인요양병원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4조6항 후단 중 “시장”을 “구미시”로 수정하였고,
- 안 제5조제2항 본문 중 “경비 및 물품의 손망실시”를 “경비”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

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, 「민법」 제750조 등에 의거 수탁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개선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